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04.13 (수) 10:0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4월 4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3. 제안 이유

-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며,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순화 및 변경(안 제명, 안 제2조, 안 제33조제1항제2호)

- 제명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
-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

나.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제4항)

-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다.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안 제17조)

- 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국장

-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과장
- 기금출납원 :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라.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안 제27조)

-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지원 사항 포함
-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지원으로 하고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마. 성장촉진지역 공장 운영비지원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지원
- 3년간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지원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고,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조례안 중 제13조제4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한 이유', 제27조제2항 중 설비투자 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 제30조의2를 신설한 이유와 충청북도의 재정부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